

광주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가단5126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주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강

변 론 종 결 2023. 1. 11.

판 결 선 고 2023. 2. 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2. 1.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22. 1. 11. 접수 제3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및 D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D 및 C은 원고에게 2021. 8.

1.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 및 그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차용일시	차용금액	변제약정일	채무자(연대보증인)	이율	증거
1	2016. 6. 10.	3,000만 원	2016. 8. 10.	D(C)	연24%	갑 제1호증
2	2016. 12. 5.	2,000만 원	2017. 1. 30.	C	연24%	갑 제2호증
3	2017. 9. 29.	2,000만 원	2017. 12. 30.	D(C)	연24%	갑 제3호증
4	2019. 2. 13.	3,000만 원	2019. 8. 13.	C, D	연24%	갑 제4호증

나. C은 2022. 1. 11.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들인 피고에게 2022. 1. 6.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접수 제3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북광주세무서, 서광주세무세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당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인 C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C과 피고의 관계,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해림

별지